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이 책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에는 상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6p)
- 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9p)
- 3 긴급복지지원제도 (10p)
- 4 행복주택 공급 (12p)
- 5 장기전세주택 임대 (16p)
- 6 기존주택 매입 임대 (17p)
- 7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18p)
- 8 통합문화이용권 (19p)
- 9 실업급여 (20p)
- 10 취업성공패키지 (21p)
- 11 내일배움카드제 (22p)
- 12 희망키움통장(I, II) (24p)
- 13 근로장려금 (25p)
- 14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26p)
- 1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27p)
- 16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29p)
- 17 만 0~5세 보육료 지원 (30p)
- 18 가정양육수당 지원 (31p)
- 19 아이돌봄서비스 (32p)
- 20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4p)
- 21 초등돌봄교실 (35p)
- 22 지역아동센터 지원 (36p)
- 23 국가장학금[I, II 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37p)
- 2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38p)
- 25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39p)
- 26 건강보험제도 (41p)
- 27 건강보험 차상위 (42p)
- 28 의료급여제도 (43p)
- 29 국가건강검진제도 (45p)
- 3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7p)
-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8p)
- 3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49p)
- 33 기초연금제도 (50p)
- 34 주택연금제도 (52p)
- 35 노인 사회활동 지원 (54p)
- 36 치매검진 지원 (55p)
- 37 노인틀니 지원 (56p)
- 38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57p)
- 39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58p)
- 40 장애인연금 (60p)
- 4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61p)
- 42 장애인 일자리 지원 (64p)
- 43 장애인 활동 지원 (66p)
- 4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67p)
- 4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70p)
- 4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71p)
- 47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72p)
-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73p)
- 49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74p)
- 50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75p)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만 214원에서 60만원을 뺀 74만 220원 지급(원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02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 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감면내역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료 면제(월 시내75, 시외75도수)) • 이동전화 기본료 월 15,000원 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 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주거 급여, 교육 급여 (가구원 포함) 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통화료 (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단, 감면은 가구당 4인 한도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 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주민센터(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단, 교육 급여대상자 월 최대 10,000원)	한국전력(☎123)
문화활동비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 주민등록등초본발급수수료면제	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 9천원, 2인 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임대주택 지원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사·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

* 취업준비생(대학교 등 졸업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결혼 예정) 포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사·군 포함)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 대학교등학교를 졸업·종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2억원, 자동차 미소유
사회초년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1.99억원, 자동차 0.25억원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 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내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5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 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 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사·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6년 80% 390만원, 100% 488만원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지원내용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구 분	지원주택규모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전용 16㎡ 이상	68%	6년 (취업준비생 4년)
사회초년생	전용 16㎡ 이상	72%	6년
신혼부부	전용 36㎡ 이상	80%	6년~10년
고령자	전용 16㎡ 이상	76%	20년
주거급여 수급자	전용 16㎡ 이상	60%	20년
산단근로자	전용 16㎡ 이상	80%	6년

3. 지원(신청)절차

입주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임대주택 포털(www.myhome.go.kr)
-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언제 청약을 하고 어디서 청약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사이트 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지역을 등록하시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 또한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사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님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05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장기전세주택 임대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4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memo

.....

.....

.....

.....

.....

.....

.....

.....

.....

06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지원예시 ▶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지원(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09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1.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 받고, 회사 사정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17.4.1 이후 이직자 1일 실업급여 상한액 50,000원으로 인상

3. 지원(신청)절차

- 퇴직 후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10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1. 지원대상

- I 유형 : 만 18~69세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4인기준 268만원) 이하인 가구원, 결혼 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 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II 유형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층, 만 35~69세의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46만원) 이하인 중장년층

2. 지원내용

참여자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 지급 - I 유형 : 15~25만원 지급 - II 유형 : 15~20만원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300만원의 훈련비 지원 (I 유형 : 최대 10% 자부담, II 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I 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원(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30만원, 6개월 근무 시 40만원, 12개월 근무 시 8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 지원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등

2. 지원내용

-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훈련비의 20~95%(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50~95%를 지원하고, I유형 참여자는 1년 간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계좌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최대 21만 6천원~41만 6천원(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 드리며, 훈련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 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신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 정보수집 → 계좌발급결정 및 개인훈련계획수립 → 내일배움카드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희망키움통장(I, II)

1. 지원대상

- I 유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4인 기준 107만 2,171원) 이상
- II 유형: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2. 지원내용

- I 유형: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II 유형: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을 지원합니다.
※ 3년 동안 통장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 I 유형: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 후 약 1,440만원
- II 유형: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 후 720만원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13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근로장려금

1. 지원대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자(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지원내용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2.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3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 ('16년 기준)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77만원	185만원	230만원

3. 지원(신청)절차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14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임산·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 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 면접 지원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사후관리 지원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고

4.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15

임산·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임산·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카드수령(포인트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90만원)
- 분만 취약지(34곳) 지원기준 충족자의 경우, 기본 지원 금액 이외 20만원 추가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에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직접 공단에 임신사실 등록 시 카드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16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4. 문의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콜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 출산 후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memo

1.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대 90일간(쌍둥이의 경우 120일간)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17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0~5세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3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어린이집 (보육료)	43만원 (종일반)	37만8천원 (종일반)	31만3천원 (종일반)			
	34만4천원 (맞춤반)	30만2천원 (맞춤반)	25만원 (맞춤반)	22만원	22만원	22만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16.7월 만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9:00~15:00) 구분

※ 맞춤반 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8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개월)	양육 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천원	0~35개월	20만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 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1.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0~2세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기준 268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4인기준 379만 7천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4인기준 536만 1천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A형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기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memo

20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2. 지원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아래 16종의 국가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항목	국가예방접종 목록
1	BCG(피내용)
2	B형간염
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4	IPV(폴리오)
5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6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7	수두
8	일본뇌염(생백신)
9	일본뇌염(사백신)
10	Td(파상풍/디프테리아)
11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12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3	PCV(폐렴구균)
14	A형간염
15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16	인플루엔자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9, 6852)

21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초등 돌봄교실

1. 지원대상

- 오후돌봄 (방과후~17:00)

-맛별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 학생

-3학년 이상은 1~2학년 학생 수용 후 학교 여건에 따라 수용
※ 3~6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돌봄수요 충족

- 저녁돌봄 (17:00~22:00)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3학년 이상은 전년도에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들 학교 여건에 따라 수용

2. 지원내용

- 오후돌봄 : 저학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및 예체능 활동,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간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휴식, 숙제, 독서 등 개인활동

- 저녁돌봄 : 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급·간식은 학부모 부담(단, 교육비지원 대상학생은 무료)

3. 지원(신청)절차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이용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www.neis.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초등학교

22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지역아동센터 지원

1. 지원대상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위소득100%(4인기준 447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 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지원(신청)절차

지역아동센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학교로 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 접수/돌봄필요여부 등 자격확인/서비스 제공 결정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사후 관리 또는 확인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23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국가장학금[I,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유형 :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1~4학년 대학생(단, '98.1.1 이후 출생자, '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
※ I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성적(B⁺ 이상) 및 이수 학점(직접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2. 지원내용

- I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 별로 차등지원합니다.

〈2017년 소득분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원)

소득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II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기초~2분위는 연간 520만원지원, '17년 기준임)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 소득분위란?

-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하여 10개의 구간(기초~10분위)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24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득 8분위 이하이며, 만 45세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채용 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2. 지원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원 한도(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대출금리 연 2.5%로 대출해 드립니다.

- ※ 소득분위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25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지원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심터를 통해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합니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이112’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60개소)*에 문의·상담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참조

memo

26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제도

자주 하는 질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 교사 직군(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 겸임교사 등)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 신고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의심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 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병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 등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타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45p)
임산·출산 진료비	임산·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다태아 9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27p)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지원(신청)절차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7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차상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 3,690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28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제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천원~2천원, (2종) 입원 10%, 외래 1천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 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45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가산계좌로 지급(다태아인 경우 9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금액 지급

29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

3. 지원(신청)절차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을 우선 이용하여야 하며, 병원 등 이용 필요시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일반 건강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 일반건강검진(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 1회) 대상자 중 만 40~66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																								
암검진	•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남·여(2년 1회) •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의 남·여 (1년 1회) •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영유아 건강검진	• 만 0~5세 영유아 - 월령별로 총 7회(구강검진 3회) 검진실시 <table><tr><th>구분</th><th>(1차) 4-6 개월</th><th>(2차) 9-12 개월</th><th>(3차) 18-24 개월</th><th>(4차) 30-36 개월</th><th>(5차) 42-48 개월</th><th>(6차) 54-60 개월</th><th>(7차) 66-71 개월</th></tr><tr><td>건강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구강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	○	○	-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	○	○	-																		
학생 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 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30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2. 지원내용

구분	지원 세부내용
일반건강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검진항목)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건강 위험요소 파악, 폐결핵 및 흉부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만 40세 : 8형 간염 항원항체검사 등 25개 항목 ※ 만 66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 문진 등 25개 항목
암검진	• (위암검진)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한 가지 선택 • (대장암검진) (1차) 분변잠혈검사 (2차)대장 내시경검사 • (간암검진)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 단백질검사 병행 • (유방암검진)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검진) 자궁경부세포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항목) 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상태 등
학생건강 검진(교육부)	• (검진항목)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 (검진항목) 비만, 시·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등

3. 자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

1. 지원대상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

2. 지원내용

각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 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 관리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자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3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3.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당하는 자

- ※ 4인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예시
- (지역) 59,930원
- (직장) 69,110원(재산과표액 2억 5천만원 이하)

2.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50%를 경감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 단, 소급 적용의 경우 유선신청 가능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memo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7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2. 지원내용

매월 최대 206,05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17.4월
기준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206,05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329,680원

※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
갑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셨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memo

1. 지원대상

주택을 소유(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2.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하여 드립니다.

- ※ 집값이 3억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매월 629,76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4,530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중신 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7.2월 가입기준)
- ※ 일정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하여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대출 상환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하여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memo

.....

.....

.....

.....

.....

.....

35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 사회활동 지원

1.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 취업창업활동 : 만 60세 이상(소득기준 없음)

2. 지원내용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 공익활동 : 월 22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30시간 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 돌봄, 경륜전수활동 등
- 재능나눔활동 : 월 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 취업창업사업단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 생산품(반찬, 셔플콕 등)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 등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수당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활동수당은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36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검진 지원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3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37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틀니 지원

1. 지원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2.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래스프(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3. 지원(신청)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 ☎129)

38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평생 2개)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3. 지원(신청)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교통비	65세 이상 노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노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시 신분증 제시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국민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 재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재산 9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경감 -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각종 공공 요금	노인 복지 시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40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도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이하에 해당되는 자

2. 지원내용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급여: 만 18~64세,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 보전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일부 보전

(*17년 4월 기준)

구분	만 18세 ~ 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8만 6,050원 기초급여 20만 6,050원 부가급여 8만	28만 6,050원 부가급여 28만 6,05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27만 6,050원 기초급여 20만 6,050원 부가급여 7만	7만 부가급여 7만
차상위 초과	22만 6,050원 기초급여 20만 6,050원 부가급여 2만	4만 부가급여 4만

* 차상위계층: '17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223만 3,690원) 이하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41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및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지원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1개소), 맞춤형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훈련센터(4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준비금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4만원 지급 (입학시 1회 한하여 지급)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게 월 28만 4천원 지급 ※ 맞춤형훈련생은 월 20만원 지급
가계보조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월 7만원 지급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있는 경우 3명까지 1명당 3만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에 의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6만 6천원 지급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 과정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하여야 함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lead.or.kr

memo

.....

.....

.....

.....

.....

.....

.....

.....

.....

.....

자주 하는 질문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은 얼마 동안인가요?**
 -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의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 등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17년부터 공단의 맞춤형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 과정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하여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신청을 하여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의 1단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되며,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훈련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가족사 생활을 하여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 (매월)
일반형 일자리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전일제 일자리 지원	일 8시간 주 5일	135만 3천원
시간제 일자리			일 4시간 주 5일	67만 6천원
복지 일자리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 등에서 공공형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	주 14시간 월 56시간	36만 3천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 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106만 6천원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서 노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84만 4천원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

.....

.....

.....

.....

.....

.....

.....

.....

.....

43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2.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09만 1천원 (약 118시간)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9만 3천원~ 252만 3천원 추가 지급
2등급	87만 4천원 (약 95시간)	
3등급	65만 9천원 (약 71시간)	
4등급	44만 1천원 (약 48시간)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한번 신청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4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 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자 가 용 자 동 차 관 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 하는 보호자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발급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시군구 교통담당과)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각 종 공 공 요 금	1~3급 장애인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전기요금 감면 (여름철 월 2만원, 기타계절 월 1만 6천원 한도)	한국전력 (☎123)
문 화 활 동 비	등록 장애인	- 고궁·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 50% 감면	입장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과 태 료	1~3급 장애인	질서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급)	사이버경찰청 (☎182)
기 타	등록 장애인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45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지원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

2. 지원내용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을 제공합니다.
※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 가정 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을 실시합니다.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 지원(신청)절차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46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기준 232만 3,038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만 13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2만원 지급,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 5만원 지급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한부모>온라인한부모 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47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8만 428원)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17만원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 강좌 수강 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mogef.go.kr)>한부모>온라인한부모 가족상담 코너)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 한부모가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2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받은 가구는 아동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동 1인당 1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2.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센터 확인

4.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memo

49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요양 급여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검사·약제, 수술 및 치료비, 보조기 등을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 급여	장해급여: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 ~ 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평균임금 1,474일분) ~ 14급(65일분)
유족 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 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알려드립니다

● 장해란?

-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50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연금특례*를 지원합니다.

*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는 60세 이후 가입 기간이 5년이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생계급여·의료급여: 시·군·구청
- 연금특례: 국민연금공단 ☎1355

memo

펴낸곳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강완구
사회보장총괄과장 고흥우
사회보장총괄과 고민진, 이서진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장 최명경
범부처정보지원부장 황재운
범부처정보지원부 이창남, 박소현

인 쇄 : 2017년 4월

디자인 : (주)활로컴(02-3141-7522)

ISBN : 978-89-97676-39-2

정부 간행물 : 11-1352000-001921-10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이 책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에는 상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